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35호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조문을 반영하여 하위 규정인 운영규정 및 별지의 자구를 수정·보완하고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범위 확대와 상담회사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정의 수정 (안 제2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내용 중 '자금알선'을 '자금 조달·운영에 대한 자문 및 대행'으로 수정

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현행화 (안 제3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중 상근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로 수정

다. 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인력 범위 확대 (안 제3조)

세무사와 변리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에 포함

라. 기타 (안 부칙 제3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4462, Fax : 042-481-3972)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2. ~ 6. (생 략)	제2조(정의) ----------. 1. ---------- ---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등록요건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영 별표에 해당하는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중 경영·기술구분없이 3인 이상을 보유하되 그중 2인은 상근 전문인력일 것 2-1 영 별표 7호의 "제1호내지 제6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경영분야> 가. (생 략) <신 설> <기술분야> 가. 중소기업청 연구관으로 5년이상 중소기업지원 사무에 종사한 자 <신 설> 3. ~ 5. (생 략) ② (생 략)	제3조(등록요건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경영·기술분야 구분없이 2인 이상이 상근전문인력일 것 2-1 영 별표 7호의 "제1호내지 제6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경영분야> 가. (현행과 같음) 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기술분야> 다. ---------- 라.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및 변경등록) ① ----------. ----------

1. ~ 3. (생 략) 4. 영 제20조제2항제1호3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상근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②~④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20조제2항제1호----------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업무운용상황보고등) ① 상담회사 등이 요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창업지원기관은 반기별 업무운용상황을 별지1의 서식에 따라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업무운용상황보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15조(업무운용상황보고등) ① ---------- ---------- ---------- ---------- ----------. ② ---------- ----------추가자료의 제출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기업청장은 컨설팅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이 상담회사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등록 신청한 상담회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담회사가 제4조에 의한 변경등록을 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부칙 제1조 ----------. 제2조(경과조치) ---------- ---------- ---------- ---------- ---------.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연 락 처	(042) 481 - 4462